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 .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영 유 아 보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 법률 제2021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 공표 누적 횟수를 추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명단 공표 심의 및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에 관한 심의 추가(안제7조제1항제1의2호 및 제1의3호 신설)
- 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 삭제 (안 제13조)
- 라. 보육전문요원의 직무가 영유아보육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15조)

- 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요건 규정(안 제16조제2항 신설)
- 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명 단공표 누적횟수 추가(안 제20조의4)
- 사.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 심의기능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 위원회로 운영(안 제20조의6)
- 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소명 절차를 중앙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0조의7)
- 자.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시책 수립·시행을 교육부·시도 의무로 규정 (안 제20조의9 신설)
- 차.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 10 및 안 제20조의11 신설)
- 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법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12 신설)
- 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 항제2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4호로 한다.

1의2.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1의3. 법 제18조의4에 따른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심의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을 "운영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능 외에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3조"를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을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 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 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0조의4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사유"를 "사유, 사업주 성명, 명단공표 누적횟수"로 한다.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4항"으로,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를 "제11조에 의한 운영세칙으로"로 한다.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 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1. 교육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2.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4.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 결한 사항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7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직장어린이집명 단공표심의위원회"를 "명단공표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9(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 1. 보육 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와 기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2. 보육교직원 분쟁조정 및 법률, 노무 및 심리·정서 상담에 관한 사항
 - ② 시·도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 2.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 3. 보육활동 침해를 당한 보육교직원 보호조치
 - 4. 그 밖에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에 의한 운영세칙으로 정한 다.
- 제20조의11(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 해당 시·도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2. 영유아 보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보육교사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4.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6. 그밖에 보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보육활동보호위 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12(영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학습,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영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보육교사"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제20조의9, 제20조의10, 제20조의11, 제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 <신 설> 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 업장의 명단 공표에 관한 사 항 <신 설> 1의3. 법 제18조의4에 따른 보 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심의 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3의2. 삭 제 4. (생략) 4.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 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 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 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u>및</u> 제공
- 2. (생략)
-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 구직 정보의 제공
- 4. 어린이집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5. (생략)
- 6.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 7. (생략)
-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 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 육
- 9. (생략)
- ② (생략)
- 직무) ① (생 략)
 -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 | ② ----- 법 제7조제1 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u> </u>				
				<u>법</u>
제7조제1형	에	따른	기능	외에
다음				
<u><삭 제></u>				
<u><삭 제></u>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 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항 및 영 제13조-----

제16조<u>(상담전문요원의 자격)</u> (생략)

<신 설>

- 제16조(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 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 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 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
 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
 람
 -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방 제 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 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 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 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 |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 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 고 있는 사람 등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

∥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방
법 등) ①
<u>교육부장관</u>
,
②
사유, 사업주 성명, 명단공표 누
적횟수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제6호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 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 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4조 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 람이 된다.

-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 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대 표하며,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장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 다.
-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장이 임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1. 교육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 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 원
- 2.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4.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 <u>집</u>한다.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 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⑧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단공표심 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 │ <삭 제>

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 람 등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⑤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을 중앙보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 의2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u>보건복</u> 지부장관</u>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 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 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

	<u>(6)</u> <u>제4양</u>
	제11조에 의한 운영세칙으로 -
제	20조의7(소명기회 부여) <u>교육부</u>
	<u> 장관</u>

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제20조의9(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제 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해야 한다.

- 1. 보육 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

 와 기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2. 보육교직원 분쟁조정 및 법률, 노무 및 심리·정서 상담에 관한 사항
- ② 시·도는 법 제18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 에 따른 시·도보육활동보호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해야 한다. 단, 「영유아보육

<신 설>

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 2.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육 교직원 대상 교육
- 3. 보육활동 침해를 당한 보육 교직원 보호조치
- 4. 그 밖에 보육활동을 보호하 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

-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 여 구성한다.
-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 장은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 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요청
 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 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⑥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 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에 의한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20조의11(시·도보육활동보호

<신 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 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 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 려하여 구성한다.

- ②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 해당 시·도 보육정책을 담 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2. 영유아 보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보육교사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4.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경험이 있는 학부모
-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6. 그밖에 보육활동 관련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 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시·도보육활동보호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시·도보육활동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신 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 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1. (생략)
- 2. 보육교사 인건비
- 3. ~ 7. (생략)
- ② (생략)

필요한 사항은 시·도보육활동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20조의12(영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 조의5에 따라 학습,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영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와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 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1	

- 1. (현행과 같음)
- 2. <u>보육교직원</u> --
- 3. ~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 202 - 3551$